

#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감사실 청렴기획부

제정 2006.12.22. 규정 제 90호

개정 2007.11.19. 규정 제108호

개정 2013.10.30. 규정 제2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상임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직무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의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의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청렴의무)** ①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를 진다.

②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전문개정 2013.10.30]

**제4조(청렴계약의 체결)** ① 임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② 임원이 청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당사자와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7.11.19>

1. 원장과 상임감사는 선임비상임이사

2. 상임이사는 원장

3. 삭제 <2007.11.19>

③ 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은 별지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상호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07.11.19>

**제4조의2(임원 부패사건 특별조사반 구성·운영 등)**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상 공소제기 및 판결,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상임감사(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임원의 부패행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패사건 특별조사반(이하 “임원 부패사건 특별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 부패사건 특별조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원은 감사실 직원과 청렴옴부즈만 등 청렴 및 감사활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상임감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반장은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 직원이 아닌 반원 중에서 상임감사가 위촉한다.

⑤ 임원 부패사건 특별조사반은 조사결과를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임원 부패사건 특별조사반의 외부인사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30]

**제5조(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① 임원이 임기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급 중 추가급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일할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하 “성과급”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주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성과급 전액

2.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성과급의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금액

② 임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 예정인 성과급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은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처분 요구권자)** ① 임원에 대한 처분의 요구권자는 상임감사로 한다. 다만, 상임감사가 처분대상이 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하는 자를 처분 요구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는 이사회 의장에게 한다.

**제7조(심의·의결기한)** 이사회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및 의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대상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처분내용을 심의·의결한다.

1.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임기중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등

**제9조(진술권)** 이사회 의장은 처분대상 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참고인의 증언을 신청할 수 있도록 7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사항 통보)** 심사평가원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 환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재심 청구)** ① 제10조에 따른 결정사항 통보를 받은 임원은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③ 이사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④ 재심 청구에 의한 결정은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결정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1.19]

**제11조(손해배상)** 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심사평가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별도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임명된 임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부칙(2007.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계약 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임원의 청렴계약 체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0.30)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직무청렴계약서

	(직책)	(성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00	0 0 0 (甲)와 · 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00	0 0 0 (乙)은 ·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甲은 乙의 직무상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 乙은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윤리경영강화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붙임 : 직무청렴계약사항

20 . . .

	(직책)	(성명)
甲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00	0 0 0 (인)
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00	0 0 0 (인)

붙임)

## 직무청렴계약사항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乙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甲과 乙간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의무)** 乙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법령,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3조(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乙은 임기 중 제2조에서 정하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령, 정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등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4조(준용규정)** 이 계약서의 계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규 등을 준용한다.

**제5조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甲과 乙이 각 1부씩 보관한다.